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-189호

2025년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 모집공고

소공인 및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「2025년 소상공인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3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·소상공인시장진홍공단이사장

※ (필독) 신청 전 유의사항 안내

- ㅇ 소공인 및 소상공인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.
 - ※ 신청자격 확인 必
- o 소상공인 온라인정책지원 플랫폼 "소상공인24(www.sbiz24.kr)"를 통해서만 신청·접수할 수 있습니다.
 - 소상공인24 사업신청 바로가기☞ https://www.sbiz24.kr/
 - ※ <u>소상공인 24 회원가입 시 대표자 명의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며, 공동</u> 대표자의 경우 주 대표자만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o 발생사유에 관계없이(시스템 오류 등) **공고마감 이후 추가접수는 불가**, 제출서류 및 정보관련, **공단에서 별도의 보완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.**
 - ※ 필수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정부 지원사업 중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.
- o 신청자격, 제출서류 등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선정 후에도 선정 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.

1 사업개요

- o (목 적) 수출 역량별 맞춤 지원으로 해외진출 연착륙 유도
- (사 업 명) 「2025년 소상공인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」
- o (지원기간) 선정일 ~ 2025년 12월 31일
- **(지원규모)** 60개사 내외(소공인 55개사, 소상공인 협동조합 5개사)
 - *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,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(공동사업 中 마케팅-해외전시) 등 '25년 유사 지원사업 선정 시 중복지원 불가
- **(신청방법)** : 소상공인24(https://www.sbiz24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
- (지원내용) 수출단계별 지원항목 內 필요항목 자율 선택

	단계구분	세부 내용
J	나전진 단(필수)	• 전문가 매칭, 정밀진단
1	교육·컨설팅	• 기초교육, 제품개선, 홍보 콘텐츠 개발
2	홍보·판촉	• 바이어 매칭, 온라인 B2C 판매
3	인증·물류	• 인증 지원, 통관지원, 물류지원
4	진출 확대	• 수출국 확대, 오프라인 진출, B2B판로지원, 마케팅지원
	사후관리	• 수출안정망 구축, 투자유치 연계, 상담센터 운영

- * 사전진단을 통한 수출단계 확정 후 해당 단계 지원항목 선택
- ** 단, 수출단계 확정 후 업체필요에 따라 하위단계 지원항목 선택가능
- *** 예시) 수출 4단계 기업의 경우 수출 1~3단계 지원항목 선택 가능
- 추진절차 및 일정(안)

1단계		2단계		3단계		4단계		5단계
모집공고 (공단)	*	사업신청접수 (공단)	-	서류평가 및 선정 (공단)	-	전문가 사전진단을 통한 맞춤지원 (공단 및 전문기관)	*	사업수행 (소공인, 협동조합)
′25. 3. 17		~ '25. 4. 7		'25. 4월 중		'25. 4월 중		~'25. 11. 30.

2 세부지원내용

 선정·진단
 ① 교육·컨설팅
 ② 홍보·판촉
 ③ 인증·물류
 ④ 진출 확대
 사후관리

- (전문가 매칭) 수출 희망 국가 및 제품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 매칭으로 全 지원 단계의 1:1 컨설팅* 및 행정 지원
 - * 제품개선, 홍보, 인증, 통관, 계약 등 수출 단계별로 수반되는 全 분야
- (정밀진단) 제품의 특·장점, 개선점 분석을 통한 수출역량 진단 후 타깃 국가·연령대 설정 등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 도출

선정·진단 ① 교육·컨설팅 ② 홍보·판촉 ③ 인증·물류 ④ 진출 확대 사후관리

- (기초교육) 쇼핑몰 활용, 국가별 수출 현황 등 온·오프라인 실무교육(수출 아카데미), 수출 전문기관*의 교육과정 연계 지원
 * (관세청) 관세 및 통관 실무 등 온·오프라인 교육 연계 등
- (제품 개선) 컨설팅을 통한 제품 성분·구성, 포장·패키지, 가격 등수출 타깃 국가의 소비 형태별 제품 개선 및 현지화 지원
- (홍보 콘텐츠 개발) SNS 홍보 채널 개설 및 마케팅 활용 교육, 제품 리플릿·카탈로그·홍보영상 제작 및 번역 지원

선정·진단 ① 교육·컨설팅 ② **홍보·판촉** ③ 인증·물류 ④ 진출 확대 사후관리

- (온라인 홍보) B2B 플랫폼 활용, 제품구매희망 (RFQ) 정보 제공 및 바이어 대상 제품 홍보 메일링 서비스 지원
- (오프라인) 수출상담회 및 품평회 참여 기회 제공, 통역 지원, 제품 분야별 진성 바이어 POOL 제공·매칭
- (온라인 B2C 판매) 수출 국가별 주요 온라인 플랫폼 입점, 해당 플랫폼 내 온라인 마케팅(디스플레이 및 검색 광고 등) 지원

선정·진단 1 교육·컨설팅 2 홍보·판촉 3 인증·물류 4 진출 확대 사후관리	선정·진단	① 교육·컨설팅	② 홍보·판촉	③ 인증·물류	④ 진출 확대	사후관리
--	-------	----------	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	------

- (인증 지원) 국가·품목별 인증 비용(지식재산권 포함) 및 관세청의 인증 취득 지원 사업(인증 수출자제도) 연계 지원
- (통관·물류 지원) 통관 이슈 발생시 공익 관세사(수출입기업지원센터 협업)를 활용한 컨설팅 지원 및 수출 물류비 지원

선정·진단 1 교육·컨설팅 2 홍보·판촉 3 인증·물류 4 **진출 확대** 사후관리

- (수출국 확대) 진출 희망 국가·업종별 시장현황, 경쟁군 등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제품개선, 마케팅 전략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
- (오프라인 진출) 해외 진출 중인 국내기업 대형마트(롯데마트 등), 해외 현지 대·소형마트 내 팝업스토어 운영 및 입점 지원
- (B2B 판로지원) 국제 박람회*, 해외현지 피칭대회 참여를 통해 바이어·소상공인 간 직접 상담·품평 기회 제공
 - * 종합 또는 분야별 특화박람회 內 소상공인 공동관 2회 개최 예정, 바이어 사전매칭 및 숙박비 지원, 기타홍보 등 참여업체 당 1회 추가혜택 제공
- (마케팅 지원) 인플루언서(라이브커머스, V-로그, PPL 등)를 활용한 모바일·온라인 홍보를 통해 타깃 국가 시장 內 인지도 제고

 1 선정·진단
 2 교육·컨설팅
 3 홍보·판촉
 4 인증·물류
 5 진출 확대
 사후관리

- (수출안전망 구축) '한국무역보험공사' 협력, 지원 사업을 통해 수출이 발생한 수혜자 대상 단체 수출보험 가입 지원
- (투자유치 연계) 기업 투자사 POOL 대상의 정기 제품 홍보, IR 대회(강한소상공인) 참여 연계 지원으로 투자유치 기회 제공
- (상담센터 운영) 지원 후 계약 성사 지속을 위한 상시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번역, 통관 상담, 서류 준비 등 추가 행정 지원

3 신청자격

- (지원대상) 60개사 내외(소공인 55개사, 소상공인 협동조합 5개사)
- (소공인)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'소상공인'이며, 한국표준산업 분류 중분류 기준 '제조업'이 주업종인 곳(업종코드 : C10~C34)
- (협동조합) 최근 10년('15~'24년) 내 공단 소상공인 협업활성화사업 (공동사업, 판로지원사업)지원 이력이 있는 협동조합* 및 연합회
 - * 5인 이상 (소상공인 50%이상)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한정
- 마감일(4. 7.) 기준,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신청 제외
 - ▶ 국세 및 지방세 체납,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
 - ▶ 휴·폐업중인 경우
 - ▶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(붙임3)이 주업종인 경우
 - ▶ 최근 1년간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제재이력 및 수사 중인 경우
 - ▶ 사행성·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상품성·안전성 미확보 상품을 보유한 경우
 - ▶ 신청일 기준 정부사업에 참여제한(부정수급 등) 중인 경우
 - ▶ 2025년 소공인 판로개척지원사업 선정된 경우
 - ▶ 2025년 소상공인협업활성화 공동사업 中 마케팅(해외전시) 선정된 경우
 - ▶ 2025년 소상공인협업활성화 판로지원사업(오프라인) 해외 박람회 참여할 경우
 - ▶ 기타 공단 내 유사사업 선정 후 참여할 경우

4 신청방법

- **(신청기간)** '25. 3. 17(월) ~ 4. 7(월) 18:00까지(기한엄수)
- (신청방법) "소상공인24"를 통한 신청·접수

구분	신청방법
	(1단계) 소상공인24 홈페이지(sbiz24.kr) 접속 → 회원가입(대표자 명의로 회원
사업조회	<u>가입 必, 공동대표인 경우 주 대표자로 가입</u>) → 로그인
시티고되	(2단계) 홈페이지 상단 "지원사업신청"→"공고조회"→ "2025년 역량단계별 수출 지원사업 모집공고" 선택
	(1단계) "2025년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 모집공고" 선택
신청서 제출	(2단계) [업체선택] [개인정보동의] [자가진단] [신청정보작성] 등 각 탭 순서대로 진행
	(3단계) 신청정보 작성 후 신청완료(완료 후 수정불가)
참고사항	※ 마감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사유에 관계없이(시스템 오류 등) 마감 이후 추가접수는 절대 불가합니다.

○ 신청서류

- (소공인) 소공인으로 지원하는 경우 필수 제출

구분		발 행 처		
	<서식1>	사업신청서	공고 內 서식확인	
	* 사업자	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s합) 사업자 보유한 조합원 전체 제출	. 관할세무서 또는	
공통서류	국세납세 * 신청일 * 법인의	국세청 홈택스		
	특허·인증	첨부파일 업로드		
	2개 中 택 1	▶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(손익계산서 포함)		
주업종 확인서류		▶ □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□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	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	
		'24년 서류발급이 불가할 경우 '23년 서류로 대체 - 단, 공고일(3.17) 기준 창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, [붙임3]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제출	공고 內 서식확인	
	□ 중소기업확인서가 <u>있는</u> 경우 ▶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 *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* 소상공인 명시 必		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	
		↓중소기업확인서 없는 경우↓		
상시근로 자 확인서류	3개 中 택 1	□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▶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* 단,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	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	
		□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(다음 중 택 1) ▶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▶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(내역) ▶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▶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(고용, 산재)	국민건강보험공 단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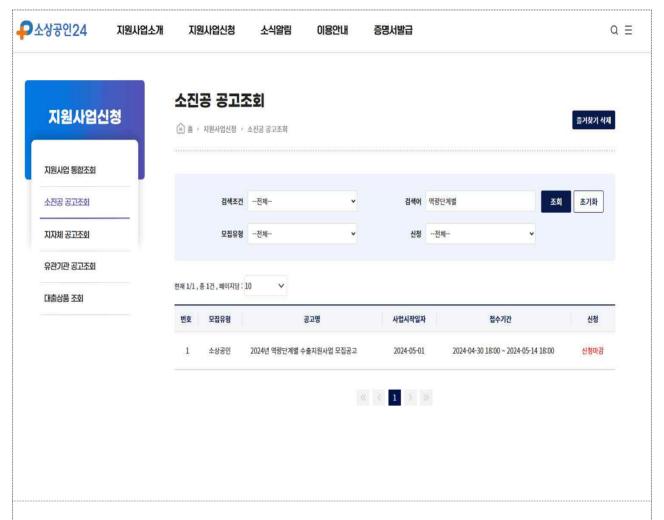
- (협동조합) 협동조합으로 지원하는 경우 필수 제출

구분	제출서류	발 행 처
	<서식1> 사업신청서	공고 內 서식확인
75.13	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*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** (협동조합) 사업자 보유한 조합원 전체 제출	관할세무서 또는
공통서류	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*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* 법인의 경우 대표자, 법인 전부 제출	국세청 홈택스
	특허·인증, 수출실적 등 증빙서류(사업신청서에 기재한 경우)	첨부파일 업로드
협동조합	▶ 조합원 명부 * 성명, 업체명, 사업자번호, 작성일자, 조합명의 인감날인 필수 (사업자가 아닌 조합원의 경우 생년월일 기재)	공고 내 서식확인 첨부파일 업로드
확인서류	▶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* 최근 1개월 이내 발급	등기소
매출확인 서류	아래 서류 모두 제출 (1) (필수) 2022, 2023년 표준재무제표 증명 (2) (필수) 2024년 매출확인서류 * (일반과세자)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* (면세사업자)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	국세청
소상공인 확인서류 (택1 제출)	▶ (권장) 소상공인확인서(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) ▶ (가능) 상시근로자 확인서류+매출액 확인서류 * 조합원 전원 제출 ** 사업자가 아닌 조합원의 경우 제출 불필요	중소기업현황정 보시스템

* 필수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

○ (신청절차) ①업체선택 → ②개인정보 동의 → ③자가진단동의
 → ④신청정보 작성 및 제출(제출 후 수정불가)

[모집공고 및 신청 안내 예시]



<사전준비>

- ① 소상공인 24 회원가입(소상공인 마당 아이디/비번 활용 가능)
 - **주 대표자 명의 가입**(공동대표 신청 불가) 후 본인 인증 필수
- ② 기관·업체 정보등록
 - 마이페이지 → 기관/업체정보 → 신규업체 등록/기존업체 등록 택1
 - 등록 후 대표자의 상호명/휴대전화번호/업종 등 변동사항 있으면 수정필수
 - ※ 기존정보가 등록되어있더라도 변동사항이 있으면 최신정보로 업데이트

<신청절차>

- ① 지원사업신청 → 소진공 공고조회 → 검색어에 공고명 조회(단어로 검색 가능)
- ② 공고가 조회되면 신청 공고 클릭 → 지원신청 버튼 클릭
- ③ 신청완료 후에는 수정 불가

5 선정절차

- **(평가절차)** 신청접수(~4.7) → 서류평가(4월 중) → 사업선정(4월 중)
- (선정평가) 제출서류 기반 외부전문가 서류평가 진행
- * 신청자격 미충족, 필수서류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
- (선정통보) 평가 고득점 순위에 따라 최종 선정하여 결과 통보
- * 선정이후 결격사유 발견 시 선정 취소처리 및 차순위자 선정 예정
- **(평가항목)** 항목별 기준에 따라 서류평가 실시

구 분	평 가 항 목	배점			
사업추진기반	•사업 이해도, 사업 수행 타당성, 해외진출 가능성 등	20			
사업추진계획	•사업목표 달성 가능성, 수행계획의 구체성, 해외진출 의지 등	30			
제품역량	•기술 및 품질경쟁력, 시장성 및 가격경쟁력 등	35			
기대효과	•성장가능성, 지속가능성 등	15			
총 점					

6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서류상 기재착오나 연락불가, 내용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단은 책임지지 않음
- 서류허위제출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어 지원받는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제조치 및 민·형사소송 가능

7 문의처

구 분	담 당 자	문 의
사업신청	소상공인24 시스템(회원가입 등) 관련	1 644-5302
사업문의	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판매촉진팀	1 042-363-7904

- 【서 식】 1. 사업신청서
 - 2. 조합원명부
- 【붙 임】 1. 소공인 업종 및 기준
 - 2. 지원제외업종
 - 3. 주업종 영업사실확인서

『2025년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』사업신청서

◆ 사전에 지원내용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지원	구분	소공인 🗆			협동조합 □						
		업체명					사업자번호 성인등록번				
		гитт	성명			:	휴대폰번호	<u>i</u>			
업체	개요	대표지	메일주소					·			
		담당지	성명			-	휴대폰번호	<u> </u>			
		66	메일주소			I					
		주소					개업년월				
OH*	출액		2022	I	20	23	T		2024	ı	
"= 7				백만원			백만원			백만원	
수	출액			천\$			천\$			천\$	
		※ 신규경	당업자이거나 해당히	i는 내용(이 없을 경우 '0'으로	작성					
		□ 수출 실무교육 □			이어 매칭 🗆 통관 물류지			지원	! □ 해외 박람회*		
지원	항목	□ 제품개선		□ 해외 온라인 판매		□ 수출국확대			□ 마케팅 지원		
희망	조사	□ 홍보콘텐츠 제작 □			민증 □ 오프라인 전		진출	출 ☐ 기타(무역보험 등)			
			선택 가능 선택은 희망조사이며	, 선정 후	수출액 등 업체의 수	출역링	등 고려하여	지원가능	항목이 달라질 수	있음	
수출	희망	1순위	•		2순위 :			3순위	:		
국	가	※ 대륙	기준이 아닌 개별	국가로 기	재(예시: 동남아시이	→ X ,	베트남→O)			
제 품 개 요	Ģ	· 특 징 및 맹 력	대하여 1,000	가 이니	화되는 자사만의 레 작성. (시장성, 장의성 등 자사 :	가격	경쟁력, 품	질 및	제품성		
									제품	넁	

		명칭	발급기관	내용	취득일자				
		00	교	410	기국 <u> </u>				
	인증 및 특허현황								
		※ 특허, 시험성적서	등 제품관련 주요	인증현황을 5개 이내	<i>'로 기재</i>				
		•							
	수출이력	•							
		※ 진출국가, 유통경	로, 주요 수출액 등	기재					
		•							
	해외진출 노력(현황)				U * 0 0 1 U T T U U				
				반도 개석배경), 해외(외진출 지원 필요성 등	진출을 위한 사전준비(성 등				
사업									
사업 신청 개요									
		•							
	지원배경 및 기대효과	•							
	기대판파		게 된 이유, 사업목 , 기대효과 등을 포		^{목표 수출액) 및 지원}				
상기	상기와 같이 「2025년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」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. 제출된 서류내용에								
	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.								
	2025년 월 일								
	대표자 : (인)								
		소상공인시	시장진흥공단	이사장 귀하					

<서식2> 조합원 명부

■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서식] <신설 2014.7.22.>

$[\]$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$[\ \sqrt{\ }]$ 조합원

연번	성 명 (법인명)	업체명	생년월일 (사업자번호)	연락처	이사장/이사/ 감사/조합원
1					
2					
3					
4					
5					
6					

* /	나업자	미보유한	조합원의	경우,	업체명	및	사업자번호	기재	불필요
-----	-----	------	------	-----	-----	---	-------	----	-----

위는 ()협동조합의 조합원 명부임을 확인합니다.

	20)25년 철	일
() 협동조합 () 이사장	· (인)

붙임1 소공인 업종 및 기준

*통계분류포털 한국산업표준분류 10차 개정 기준

		업종	매출액 기준	상시근로자수
	C10	· 식료품 제조업	16716	0.4E=11
	C11	· 음료 제조업		
	C14	·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	
	C15	·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	
	C19	· 코크스,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		
	C20	·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 제외)		
	C21	·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	
	C23	·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	120억원 이하	
	C24	· 1차 금속 제조업		
	C25	·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)		
	C26	·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	
제	C28	· 전기장비 제조업		
조	C29	·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	10명 미만
업	C30	·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	
	C32	· 가구 제조업		
	C12	· 담배 제조업		
	C13	·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)		
	C16	·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 제외)		
	C17	·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	
	C18	·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80억원 이하	
	C22	·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	
	C27	·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	
	C31	·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		
	C33	· 기타 제품 제조업		
	C34	·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10억 원 이하	

붙임2 지원제외 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 종	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	
 46102 중	담배 중개업	
 46107 중	예술품,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	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	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	
46416, 46417 중	모피제품 도매업 * 단,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	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	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	
47811 중	약국, 한약국	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	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	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	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	
56211	일반유흥주점업	
56212	무도유흥주점업	
58122 중	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	
58211, 58212, 58219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	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	
64	금융업	
65	보험 및 연금업	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	
68	부동산업 * 부동산의 임대, 구매,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,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·분양, 임대 활동이 포함 * '착한 임대인'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(68112) 신청 가능 ('20.12.~'21.12.) (4page 참고) * 단, 부동산관리업(6821),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은 신청가능 -부동산관리업: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(주거용·비주거용 부동산관리)	

표준산업분류	업 종	
	-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: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,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 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	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	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	
731	수의업	
73904 중	감정평가업	
75330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(예: 탐정업, 흥신소 등)	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	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	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 * 안마원(96122)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(통계청 기준)	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	
91121	골프장 운영업	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	
91221 중	성인용 게임장 운영업	
91241 중	복권 판매업	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0)	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	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	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	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	

[※]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/불가능업종 관련 해석(예외) 및 예시

- ▶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, 상인용품소매 지원불가
- ☞ 산업파급효과가 적고,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
- ▶ JIEI
- 골프연습장(91136), 스크린골프연습장(91136)은 지원가능

붙임3

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양식

※ 다음과 같이 소공인 지원 시 주업종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합니다.

최근창업한 자로써 당기(직전회계연도)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 포함)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(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포함), 면세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증빙자료 구비가 불가한 경우, <u>주업종확인서류</u>를 작성하여 제출

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

업체명 (상호)	대표자명	사 업 자 등록번호			
사업자등록증(명) 상 업태(업종) (예 : 제조업+도소매업)					
주업종명(업종코드)* (예 : 식료품 제조업(C10))					

* [붙임1.2] 소공인 업종 및 기준을 확인하여 부합하는 업종명과 코드기재

위와 같이 실제 영업 중임을 확인하고, 후에 위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 불가, 관련 국고보조금 전액회수와 더불어 민·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.

2025년월일업체명:(인, 서명)

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앞